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 게시판 → 공지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는?

- 사업주 주도 하에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② 관리감독자
 -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④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다함께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추진절차는 이렇습니다.



STEP 0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STEP 0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STEP 03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상시근로자수 20명미만(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생략 가능

STEP 04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STEP 0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위험성평가의 방법·시기는 이렇습니다.



🔄 위험성평가의 방법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 근로자 :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위험성 감소 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참여

📅 위험성평가의 시기는?

- 최초평가 :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 수시평가 :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이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기록 및 보존 방법은?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http://kras.kosha.or.kr>)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조수단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컨설팅 및 인정 이렇게 받으세요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사업 소개

구분	위험성평가 컨설팅	위험성평가 인정
소개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컨설팅 해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요건에 충족한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대상	전 업종(건설업 제외):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종 :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 건설업체 분사 또는 총 공사 금액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전 업종(건설업 제외):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종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신청 방법	온라인 : 온라인·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에서 신청 (사업장회원 회원가입 필요) ※ 컨설팅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 지원 정책에 따라 공단이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 산재보험요율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 KOSHA-MS 컨설팅비용 우선 지원(50인 미만) 및 실태심사비 면제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 (60억~100억)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한도 1.5배 우대, 보증(협)료 20% 할인 등
-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한도 1.5배 우대, 보증(협)료 20% 할인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와 함께 하세요!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 지원신청서”를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교육기관에 제출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교육** : 안전보건공단 광역 교육센터에서 실시
 -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1년도에는 집체 교육방식에서 인터넷 원격교육 방식으로 전환 운영
 - ※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 인터넷교육센터(<https://www.safetiedu.net>)에서 신청가능
- **평가담당자 교육** :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민간교육기관에서 실시
 -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에서 신청 가능
 - ※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수료 시 수료시간만큼 당해연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위험성평가 고시 제24조제3항)

민간교육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 서초구 효령로 179 혜산빌딩	02-2046-0512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빌딩	02-6275-8680
(사)안전보건진흥원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52(독산동) 독산빌딩 3층	02-804-7900
(사)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38 이현빌딩 301호	02-869-0390
(사)한국안전기술협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2, 고잔법조빌딩 402호	031-480-8504
(주)경남안전기술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5, 3층	055-273-7012
(주)나아넷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804호)	02-6494-2010
(주)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8	053-586-9300
(주)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로 19-1	043-212-4611
(주)대한산업안전본부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774(청양빌딩 2층)	042-825-6506-7
(주)대한안전기술연구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95 공전타워 602호	031-411-8410
(주)에이스직업전문학교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2	02-702-4020
(주)올원에듀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1403호	1688-2447
(주)한국안전기술지원단	부산 강서구 대저로 294 한국안전기술지원단빌딩	1544-2264
(주)서울유니에듀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83, 케이티엔지 2층	051-632-0644
산업훈련원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60, 301(고잔동, 원원프라자)	070-7006-8750
한국화학안전협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76, 김치프라자 402호	1644-9049
주식회사 한국안전기술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5길 25 (호림동) 3층	053-523-8700
주식회사산업안전기술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252 (이곡동) 3층 (246번지 2층)	053-986-2552
한국산업안전전설빌(주)	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로 118 (상도동 2,3층)	054-253-3632

「산재예방요율제」로 산재보험요율 인하 받으세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이하 "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징수법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보험료 일괄징수를 받는 사업장 (일괄사업장)은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2 적용방법

① 위험성평가 또는 ②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인정 유효기간동안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 ①과 ②를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인하율이 더 높은 것을 적용**

산재보험요율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or 사업주교육 인정 10%

※ 관련근거

-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43호(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3 인정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교육 인정 1년

※ 산재보험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일괄계산)

4 업무처리절차



5 업무처리기관

- 안전보건공단 :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접수 및 인정여부 결정 (문의: 리플렛 내 공단 일선기관 연락처 참조)
- 근로복지공단 : 산재예방요율 결정 및 보험료 징수(매년 1월 5일 일괄적용)
- 고용노동부 : 재해예방활동 인정취소 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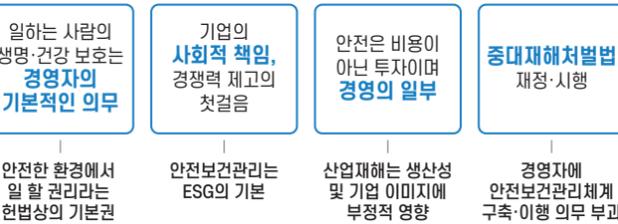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왜 필요한가?



“ 산업안전보건관리!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

과거의 임기응변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활동 필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는?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7가지 핵심요소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이 다르므로 여건에 맞게 구축

기술역량 및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업 |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 | **공식적·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스템 산재예방을 위한 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Tool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KOSHA-MS, ISO45001

활동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

개선 이를 이행하고,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연락처

구분	관할지역	위험성평가 업무 담당자	위험성평가 교육업무 담당자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동대문구,서대문구,은평구,마포구, 용산구,서초구,강남구	02-6711-2891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	02-6924-8737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강랑구,노원구,강북구, 도봉구,성북구	02-2086-8022	서울교육센터 02-6711-2899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033-815-1083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 영월군,정선군 및 평강군	033-820-2552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608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31	부산교육센터 051-520-0558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055-269-0557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055-371-7543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 구례군,담양군, 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062-949-8765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 순창군,완주군, 진안군 및 무주군	063-240-8543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부안군 및 고창군	063-460-3623	광주교육센터 062-949-8718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 해남군,장흥군, 진도군 및 신안군	061-288-8736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061-689-4932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22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23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031-828-1928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032-680-6513	인천교육센터 032-510-0645
고양파주지사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031-540-3815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	031-259-7129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031-481-7516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031-785-3343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053-609-0556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중리,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 고령군 및 성주군	053-650-6836	대구교육센터 053-609-0574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 안동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 및 청송군	054-478-8028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054-271-2046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042-620-5653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증평군,괴산군,영동군,옥천군,보은군	043-230-7125	대전세종교육센터 042-620-5677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음성군,단양군	043-849-1012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보령시,서산시 및 예산군,홍성군, 서천군,부여군,청양군,태안군	041-570-3440	